

장기요양급여비용(2025년도)

1. 이용대상자

- 노인장기요양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 중 재가급여대상자(장기요양 1~5등급)
- 노인장기요양보험에 해당하는 비용을 전액 본인 부담하여 이용하기를 원하는 자

2. 등급별 재가급여 월 이용한도액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등급
재가급여 월한도액	2,306,400원	2,083,400원	1,485,700원	1,370,600원	1,177,000원	657,400원
1일 가능시간	최대 4시간(240분) 66,700원		최대 3시간(180분) 54,320원		최소2시간 ~ 최대3시간	이용 불가
월최대 서비스 가능 일수	31일	28일	27일	25일	21일	이용 불가
최대 8시간 이용 일수	8회/월	8회/월	4회/월	4회/월	0회/월	이용 불가

3. 이용시간 당 비용

방문요양

구 분	방문당	총 재가급여비용	본인부담(15%)	본인부담(9%)	본인부담(6%)
방문요양	30분	16,940원	2,541원	1,525원	1,016원
	60분	24,580원	3,687원	2,212원	1,475원
	90분	33,120원	4,968원	2,981원	1,987원
	120분	42,160원	6,324원	3,794원	2,530원
	150분	49,160원	7,374원	4,424원	2,950원
	180분	55,350원	8,303원	4,982원	3,321원
	210분	61,670원	9,251원	5,550원	3,700원
	240분	68,030원	10,205원	6,123원	4,082원

- 심야가산
22시 ~ 익일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 가산
- 휴일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 가산
- 유급휴일가산
유급 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50% 가산
- 가산은 급여를 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야간, 심야, 휴일 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음
- 월 이용 한도액(공단 부담 85% + 본인 부담 15%)은 장기요양 등급별로 지급하는 금액이며, 한도액을 초과 시 100% 본인 부담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 없음.

방문목욕

구 분	급여비용	본인부담(15%)	감경(9%)	감경(6%)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86,480원	12,972원	7,783원	5,189원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77,970원	11,696원	7,017원	4,678원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8,690원	7,304원	4,382원	2,921원

● 심야가산

방문목욕 급여 비용은 주 1회 산정하며,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소요 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함

● 월 이용 한도액(공단 부담 85% + 본인 부담 15%)은 장기요양 등급별로 지급하는 금액이며, 한도액을 초과 시 100% 본인 부담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 없음.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시행규칙 제22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2조(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에 의거,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하여야 합니다.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의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급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며, 시설급여의 월 한도액은 급여에 소요되는 장기요양기관의 각종 비용과 운영현황을 고려하여 등급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1일당 급여비용에 월간 일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